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제안 답변

건의자		연락처	
제 목	수혈감염이나 의료관계자들의 치료중 감염이외에 에이즈 치료비 및 간병비 100% 자가부담 하도록 법령개정		
건의내용	에이즈 치료비 및 간병비는 전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어, 청소년과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있으며 동성애를 권장하는 꼴이 되어 에이즈 천국이 되고 있음. 현행 시행중인 치료비와 기타 경비의 모든 비용을 자가부담으로 변경		
관련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담당자	성민희
검토의견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HIV/AIDS관리지침에 의거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진료비 일부 지원 <p>○ 그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11.2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법률 제3943호)” 제정 - 1988.01.2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 - 1989년 감염인 진료비 지급 개시 <p>○ 진료비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지원 중지 시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HIV 관련 진료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 부담하도록 되어있음(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90%건강보험 + 10%국가예산(중앙정부, 지자체) - 진료비 지원사업은 적시 치료를 통해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임. 		

검토의견	<p>○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즈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HIV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하여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방법임. 이를 통해 국가 HIV/AIDS 관리정책방향인 에이즈 전파예방을 통한 신규감염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의 HIV진료비 지원사업이 개인의 성적지향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입증 되지 않은 사실로 진료비 지원을 중단해야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수용이 어려움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제안내용은 현행법령의 취지와 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임 - 앞으로도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질병정보와 함께 예방방법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음
조치결과	수용곤란